

수익자총회 소집통지서

댁내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대신 비타민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H)[주식]의 집합투자규약 제 37 조에 의하여 2011년 1월 19일 개최한 수익자총회 결과,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되어 연기수익자총회 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편 드 명 : 대신 비타민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H)[주식]
2. 일 시 : 2011년 2월 1일(화) 오전 9시
3.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빌딩 11층 대신증권(주) VIP실
4. 회의목적사항
《부의 안건》
제 1 호 의안 : 신탁업자변경의 건(도이치은행서울지점->SC 제일은행 변경)
- 수익자총회사유: 신탁업자인 도이치은행서울지점의 수탁업무 청산
5.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금번 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0 조 6 항에 의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므로 동봉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여 총회일 전일(2011년 1월 31일)까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번호 : 02-769-2808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빌딩 5층 대신자산운용 마케팅본부
6. 수익자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수익자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수익자총회 참석장, 위임장(위임사실 증명서류), 대리인신분증
7. 기타사항
- 수익자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문의 전화번호 : 02 - 769 - 3233 (대신자산운용)
8. 첨부 : 1) 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 2)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3)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4) 반대의사 통지서 및 매수 청구서, 5) 위임장

2011년 1월 24일
대신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온기선(직인생략)

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란 대부분의 수익자가 물리적.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수익자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 등으로 수익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0 조 제 6 항에 의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익자께서는 굳이 수익자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수익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활용하시어 수익자의 의견이 펀드의 운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 1) 보내드린 통지서의 수익자총회 부의 안건을 읽어 주십시오.
 - 2) 의결권 표시 방법 : 아래의 표 '찬성 또는 반대'란에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찬,반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 3) 수익자 성명란은 기명날인(사인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 4) 수익자께서 의사표시하신 서면의결권행사 통지서를 밀봉하시어 당사 (대신자산운용(주))으로 수익자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5) 도착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모두 집계되어 수익자총회 당일 직접 참석한 수익자의 의결권과 합산되어 수익자총회 의안의 투표에 반영됩니다.

대신자산운용(주) 귀중

본인은 2011년 2월 1일 개최되는 '대신 비타민 증권 자투자신탁 제 1호(H)[주식]'의 수익자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0 조 제 6 항에 의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로 행사하고자 합니다.

수익자명		(인)	수익자총회 참석장상의 수익자정보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유좌수			
제 1 호 의안		찬성	
		반대	

2011년 월 일

성명

(인)

수익자명과 성명란에는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제 1 호 의안 : 신탁업자변경의 건(도이치은행서울지점->SC 제일은행 변경)

- 대신 비타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변경 전	변경 후
<u>도이치은행 서울지점</u>	<u>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u>

- 대신 비타민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H) [주식]

변경 전	변경 후
<u>도이치은행 서울지점</u>	<u>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u>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1.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1 조에 따라 해당 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께서는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인 **2010년 12월 28일** 현재 수익자명부에 등재된 수익자로서 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소유 증권을 계속 보유하고, 다음 행사요령에 따른 절차를 취하셔야 합니다.

2. 매수청구권 행사요령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반대의사 통지** 및 **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가. 안건(신탁약관의 변경 등)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반대의사 통지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 명부수익자는 총회전까지 대신자산운용회사에 ▲ **실질수익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수익자, 이하 “실질수익자”라 함)는 총회일 2영업일전(2011년 1월 28일)까지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권 행사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승인된 경우에는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한 수익자에 한하여 ‘매수청구서’(붙임양식)를 작성하여 ▲ 명부수익자는 매수청구종료일(2011년 2월 21일)까지 소유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대신자산운용회사에 ▲ **실질수익자는 매수청구종료일 2영업일전 (2011년 2월 17일)까지 판매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매수가격과 지급예정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1 조 3 항 및 동 시행령 제 222 조에 의거하여 매수가격은 **2011년 2월 24일**의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매수대금은 **2011년 3월 3일**부터 거래하는 판매회사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수익증권 매수가격의 조정신청 절차 (주의 요망)

투자신탁재산은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탁은행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수탁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에서 매수가격이 정해짐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2 조) 별도의 매수가격 조정신청절차는 없음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매수청구 종료일 이후에는 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실질수익자의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사무업무처리 일정에 따라 ‘총회의결 반대의사 통지서’ 및 ‘수익증권 매수청구서’ 제출시한 1~2일 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명부수익자의 ‘총회의결 반대의사 통지서’ 제출처
 - . 자산운용회사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빌딩 5층
대신자산운용주식회사 마케팅본부
 - . 전화번호 : 02-769-3233
 - . 팩스번호 : 02-769-2808

(반대의사 통지서 및 매수 청구서)

총회 의결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대신 비타민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H)[주식]의 총회 의결사항(안건 기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수익자번호	
소유증권수	좌
반대의사표시증권수	좌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대신자산운용 대표이사 귀하

=====절 취 선=====

수익증권 매수 청구서

본인은 귀사의 대신 비타민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H)[주식]의 총회 의결사항(안건 기재)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수청구를 청구합니다.

수익자번호	
소유증권수	좌
반대의사표시증권수	좌
매수청구 증권수	좌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대신자산운용 대표이사 귀하

